

행 정 자 치 부

주의·시정 요구

제 목 중요회의록 등 기록물의 등록관리 부적정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인사과, 세정과, 소방행정과, 창원시, 진주시, 사천시, 밀양시, 창녕군, 고성군, 하동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내 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및 녹음기록을 생산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8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업무수행과정에서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기록물의 등록·분류·편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법령에서 정한 생산의무에 따라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회의록은 그 회의를 소집 또는 주관하는 공공기관이 작성하여야 하고, 주관기관이 불분명하거나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대상 회의의 참석자 중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업무의 연관성이 가장 높은 공공기관을 정하고, 해당 공공기관이 작성하도록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기록물에 표기하여야 하며, 등록정보를 임의로 수정 또는 삭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경상남도(○○과)는 2012년 1월부터 2016년 11월 감사일 현재까지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42회 개최하여 회의록을 생산하였으나, 이에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임의로 관리한 사실이 있고

경상남도(○○과)는 2012년 1월부터 2016년 11월 감사일 현재까지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62회 개최하여 회의록을 생산하였으나, 이에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임의로 관리한 사실이 있으며

경상남도(○○○○과)는 2012년 1월부터 2016년 11월 감사일 현재까지 「소방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를 18회 개최하여 회의록을 생산하였으나, 이에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임의의 수기대장에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관리한 사실이 있고

경상남도 창원시(○○○실)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11월 감사일 현재까지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를 5회 개최하여 회의록을 생산하였으나, 이에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임의로 관리한 사실이 있으며

경상남도 진주시(○○과)는 2012년 2월부터 2016년 11월 감사일 현재까지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라 ‘진주시인사위원회’를 44회 개최하여 회의록을 생산하였으나, 이에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임의의 수기대장에 별도의 관리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관리한 사실이 있고

경상남도 사천시(○○○○○○관)는 2012년 12월부터 2011년 11월 30일까지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를 5회 개최하고, 서면심의

를 2회 실시하여 회의록, 심의의결서 등을 생산하였으나, 이에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임의로 관리대장에 관리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관리한 사실이 있으며

경상남도 사천시(○○과)는 2012년 2월부터 2016년 11월 감사일 현재까지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라 ‘사천시인사위원회’를 77회 개최하고, 서면심의를 67회 실시하여 회의록, 심의의결서 등을 생산하였으나, 이에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임의의 수기대장에 관리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관리한 사실이 있고

경상남도 밀양시(○○과)는 2012년 7월 27일부터 2016년 11월 감사일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를 19회 개최하고, 서면심의를 1회 실시하여 회의록, 심의의결서 등을 생산하였으나, 이에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임의의 수기대장에 관리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관리한 사실이 있으며

경상남도 창녕군(○○○○실)은 2012년 1월부터 2016년 11월 감사일 현재까지 「창녕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창녕군 군정조정위원회’를 44회 개최하여 회의록을 생산하고,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를 2개 개최하고, 7회 서면심의하여 회의록, 심의의결서 등을 생산하였으나, 이에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임의로 관리한 사실이 있고,

경상남도 고성군(○○○○실)는 2012년 2월부터 2016년 11월 감사일 현재까지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따라 ‘고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를 2회 개최하고, 13회 서면심의하여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 등을 생산하였으나, 이에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임의의 수기대장에 관리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관리한 사실이 있으며,

경상남도 하동군(○○과)은 2012년 1월부터 2016년 11월 감사일 현재까지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라 ‘인사관리위원회’를 37회 개최하고, 서면심의를 44

회 실시하여 회의록, 심의의결서 등을 생산하였으나, 이에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임의의 수기대장에 관리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관리한 사실이 있으며,

경상남도 함양군(○○○○실)은 2015년 1월 18일부터 2016년 9월 21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25회 개최하여 회의록을 생산하였으나, 이에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임의로 관리한 사실이 있고,

경상남도 거창군(○○○○실)은 2012년 1월부터 2016년 11월 감사일 현재까지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를 5회 개최하여 회의록을 생산하였으나, 이에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임의로 관리한 사실이 있으며,

경상남도 거창군(○○과)은 2012년 1월부터 2016년 11월 감사일 현재까지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라 ‘거창군 인사위원회’를 41회 개최하고, 서면심의를 16회 실시하여 회의록, 심의의결서 등을 생산하였으나, 이에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임의의 수기대장에 관리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관리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경상남도지사, 창원시장, 진주시장, 사천시장, 밀양시장, 창녕군수, 고성군수, 하동군수, 함양군수, 거창군수, 합천군수는

[주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의 회의록 등을 생산한 후,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등록·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기존에 생산하여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미등록한 회의록 등은 임의의 수기대장으로 관리하지 말고,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원안 제목으로 등록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